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. 3. 22 선고 2021나30334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---

## 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삼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현석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

담당변호사 정희재

변 론 종 결 2022. 3. 8.

판 결 선 고 2022. 3. 22.

제1 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삼척시법원 2021. 1. 14. 선고 2020가소 136 판결

## 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### 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15,238,007원과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5,238,007원과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1)

## 이 유

### 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,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‘2. 추가판단’을 추가하고, 제1심판결 3쪽 10행의 ‘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’를 삭제하고, 3쪽 13행의 ‘주장 · 입증’을 ‘입증’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### 2. 추가판단

#### 가. 원고 재항변의 요지

원고가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더 많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다른 채무의 변제이거나 동업관계로 인하여 송금받은 돈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었다.

#### 나. 판단

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,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타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타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 · 입증하여야 한다(대법원 1999. 12. 10. 선고 99다14433 판결 등 참조).

갑 제8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가 피고 또는 C 주식회사에 2015. 3. 14.부터 2017. 3. 2.까지 합계 78,917,17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. 그러나

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타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타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.

### **3. 결론**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   판사 박재형, 판사 조영인, 판사 임세영

- 1) 원고는 항소취지 제1항으로 “원심판결을 취소한다.”고 기재하고, 항소취지 제2항에서 제1심의 청구취지를 그대로 구하고 있는바, 항소취지 제1항을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선택한다.